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OSP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있나요?		
02	저작권 준수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의 운영 규정에 고지되어 있나요?		
03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구비되어 있나요?		
04	저작권 침해물 발견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나요?		
05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게시하고 있나요?		
06	저작권 침해물 발견 시 게시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나요?		
07	법원에서 요청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나요?		
0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나요?		
09	(특수한 유형의 OSP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저작물이 불법으로 도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나요?		

-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물의 유통은 종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기관에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과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의 공간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호원의 열린상담실에 접수되는 저작권 상담 중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권리침해, 즉 범죄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을 직접 범죄 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활용하는 범죄이고, 다른 하나

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범죄입니다.¹⁶

- 대다수 기관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겪는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기관에서 직접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가 기관 홈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간을 제공한 기관은 방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이 가지는 순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은 온라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위한 의무 조항(법 제102조)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온라인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42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인데, 즉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제재로서 금전벌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수단입니다. 이하에서는 설령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 방법과, 아울러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제3자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저작물이 게시되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므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권리자와 홈페이지 관리자 양쪽의 입장에서 해당 사항을 잘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16 김영기,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20권, 2012, 322면.

2.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가이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상에서 저작권(저작권인접권을 포함, 이하 “저작권등”이라 합니다)이 침해되더라도, OSP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를 네 가지로 나누어, 아래 표와 같이 각 기능별로 면책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두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의 기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도관서비스사업자 (제1호)	<p>가. OSP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함</p> <p>나. OSP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함</p> <p>다. 저작권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p> <p>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음</p>
캐싱서비스사업자 (제2호)	<p>가. 도관서비스사업자의 면책요건을 모두 갖춘</p> <p>나. OSP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함</p> <p>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함</p> <p>라. 복제·전송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따름</p> <p>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함</p> <p>바.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함</p>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제3호 전단), 정보검색서비스 사업자 (제3호 후단)	가. 도관서비스사업자의 면책요건을 모두 갖추 나. OSP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함 다. OSP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킴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
--	---

- **도관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는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호에 의하여 면책되려고 한다면, 저작물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의 매개자 역할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¹⁷

- **캐싱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OSP가 네트워크상의 트래픽(traffic, 전송정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는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¹⁸

캐싱서비스사업자에 고유한 면책요건인 다목 내지 바목은 중앙서버에 저장된 원 콘텐츠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중앙서버의 원저작물이 캐시서버에서 수정되어서는 안 되며, 원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암호, 이용료 지불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17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下)>, 명문프리카, 2011, 534면.

18 박성호, 앞의 책, 725-726면.

않고 캐시서버에만 따로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앙서버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행화(업데이트)¹⁹ 및 기술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원저작물이 접근제한 또는 삭제된 경우 캐시서버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호스팅서비스사업자 또는 저장서비스사업자**는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OSP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등에서 서버의 일정 공간을 제공(hosting)하고, 저작물등을 해당 공간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호스팅서비스사업자”라고 하면 서버 제공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쉬우나, 일반 기관이라도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이 호의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의 면책요건을 특히 주의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목에서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용료, 전송속도 상향, 전송속도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²⁰, 일반적인 무료 공개 게시판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 및 라목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와 관련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시어 평소에 면책요건을 갖추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이어지는 2)항을 참조해 주세요.

-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를 뜻합니다.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의 면책요건은 호스팅서비스사업

19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라목 단서). 예를 들어 현행화 간격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캐시서버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58면.

자와 동일합니다.

- 다만, OSP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등의 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102조 제2항). 또한 위 면책과 관련하여 OSP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동조 제3항).

2) 복제·전송의 중단(법 제103조)

- 저작권법 제103조는 저작권등을 침해한 게시물에 대하여 OSP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을 받아 그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게시자의 소명에 의하여 복제·전송을 재개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에 규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OSP는 저작권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권리가 있는 복제·전송으로 밝혀져 게시가 재개된 경우 그 게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103조 제5항).
- 제103조의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계	근거조항	취해야 할 조치	구비서류
사전 조치	수령인 지정 및 공지 (제4항)	홈페이지에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지해둔다.	① 성명 및 소속부서명 ② 전화번호·팩스 및 이메일주소 ③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요구 접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접수 (제1항)	저작물의 권리주장자로부터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주세요'라는 요구를 접수한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① 저작권등록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저작자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중 하나

처리 및 통보	복제·전송의 중단 및 통보 (제2항)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 조치하고, 그 내용을 권리주 장자와 복제·전송자(게시자)에게 통보한다.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	----------------------------	---	--------------

재개접수 및 처리	게시자의 재개 요구 접수, 처리 (제3항)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 당 게시물의 게시 재개를 요구한 경우,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 게 통보하고, 재개예정일에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재개한다. 단, 권 리주장자가 게시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 예정일 전에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게시를 재개하지 않아도 된다.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① 저작권등록증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② 저작자명이 표시되어 있 는 저작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중 하나 ③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전 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④ 저작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
--------------	----------------------------------	--	--

- 자신의 저작권등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권리 주장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OSP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법 제103조 제6항),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권리주장자**가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로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

복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만일 위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의 손해배상 및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령 제40조 제2항).

-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자(“**복제·전송자**”) 또한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와 함께 소명자료로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제·전송자 역시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령 제42조 제2항).

-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면, OSP는 요청한 저작물에 대하여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이를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하며(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호스팅서비스사업자와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저작물을 게시한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이에 대해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면 OSP는 요구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OSP에게 통보하였다면 OSP는 복제·전송을 재개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 제

103조 제2항 및 3항).

- 위의 과정에서 OSP는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수렴하는 창구가 됩니다. 만약 이 창구가 없다면 권리주장자도, 복제·전송자도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서는 **OSP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공지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수령인을 지정(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수령인의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저작권 관리담당자를 본조의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2장을 참조하여 주세요.

-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수령인을 공지하고,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밟은 경우 OSP는 저작권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기 전에 저작권등의 침해 사실을 OSP가 미리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103조 제5항). 즉 OSP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저작권등의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는 없지만(법 제102조 제3항),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방치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3) 면책된 OSP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법 제103조의2)

저작권법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침해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하거나, 저작권법위반죄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23조 제3항).
- 이 때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서비스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법원은 제103조의2에서 정한 특정한 조치만을 OSP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명령을 한다면 면책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범위는 온라인서비스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4)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청구(법 제103조의3)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SP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게시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 사이에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주장자는 민·형사 소송을 위하여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달라고 OSP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권리주장자가 요청한다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와 절차를 법령상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OSP에게 그 OSP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OSP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제

103조의3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OSP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명령청구에 대하여 제1장 제2절 5.를 참조해 주세요.

-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OSP에게 바로 정보제공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여부를 심의하는데,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여부와 청구의 필요성 및 정보 획득의 곤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제공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OSP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OSP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OSP는 정보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령 제44조의4).

5)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법 제104조)

-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OSP의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여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앞에서의 일반적인 의무 이외에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04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6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따르면,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거나(예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은 제공하고 다운로드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 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가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합니다.

-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권리자는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와 함께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령 제 45조).

-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란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앞의 기술적인 조치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말합니다.
1. 및 2.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령 제46조).

- 특수한 유형의 OSP가 권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14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법 제104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3호 가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실시 계획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제1호). 특수한 유형의 OSP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조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의 조치(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또한 갖추어야 하니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6)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이행(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OSP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원은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 대하여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OSP가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에 따른 권고를 받

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OSP가 시정조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시정명령은 별도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133조의2 제1항). OSP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의2 제6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3조의2 제2항). 명령서를 받은 OSP는 지체 없이, 최소한 계정 정지 7일 전에 명령서의 내용 및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의2 제3항, 령 제72조의3 제4항). 또한 OSP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의2 제6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계

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3조의2 제4항). 게시판의 정지를 명령받은 OSP는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을 기재하여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의2 제5항). OSP는 위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33조의2 제6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게시판의 정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령에 대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OSP와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제출의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6항까지, 그리고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제133조의3의 권고는 불이행한다고 즉각적인 행정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133조의2상의 의무,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제·전송자에게의 통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사실의 게시, 조치결과의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